

사업분류	④리스크대응	진행상태	접수중
사업명	2026 충북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		
지원기간	2026.04.03 ~ 2026.12.31	접수기간	2026.04.03 ~ 2026.12.11
안내문	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「2026 충북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」 사업을 추진합니다.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명 : 2026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</li> <li>○ 사업기간 : 2026. 4월 ~ 사업비 소진시까지</li> <li>○ 지원규모 : 약 50개사 내외(선착순 지원)</li> <li>○ 지원분야 : 전 세계 571개 중 인증 및 규격(붙임 참조)</li> <li>○ 추진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CBGMS 사업공고 온라인 사업참가신청 - [양식] 사용계획서 작성 및 첨부</li> <li>② 참여기업 자체 인증 선 취득 추진(현 공고에서 별도 '선정' 처리 없음으로 선정 결과 기다리지 말 것에 유의)</li> <li>③ 취득 완료 후 보고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이메일 제출 - [붙임1] 완료보고서, 성과보고서 및 참여기업 각서 작성 및 제출</li> <li>④ 운영기관(청주상공회의소)의 서류 검토 후 최종 지원 기업 확정</li> <li>⑤ 지원금 지급(한 달 이내)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남은 기업들은 온라인 참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자동 탈락</p>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대상 : 해외규격인증을 선 취득한 충북 소재 기업 약 50개사 내외(선착순 지원)</li> <li>○ 지원기준 : 충북에 본사(점) 또는 공장 소재(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)</li> <li>※ 본점 소재지로 신청할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상 '본점' 소재지가 충북이어야 참여 가능. 중된 사업장의 소재지로는 참여 불가</li> <li>○ 지원기준 : 예산 소진 전까지 인증을 취득하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함</li> <li>○ 제출서류(담당자와 별도 연락 후 제출, ※해당 서류는 온라인 참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. 인증 취득 후 완료보고 시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.) - 완료보고서 1부(인증 취득 완료 후) - 성과보고서 1부 - 참여기업 각서 1부 - 인증서 사본(DoC 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) - 인증심사보고서 1부(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) - 공장심사보고서 1부(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) - 시험성적서 1부(각 시험규격별 요약본) - 비용 관련 증빙서류(인증비용, 시험비용, 컨설팅비용) 각 1부 - 사업자등록증 1부 - 통장 사본 1부</li> </ul>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지원범위: 기업당 1인증, 최대 8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(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자부담 20%)</li> <li>2)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환경 대응을 위해, 중동 주요국의 규격인증 취득 건에 한하여 기업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 ※ 단, 해당 국가로의 수출 물품 자체가 아닌 해당 국가의 규격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※ 중동 주요국 : 사우디아라비아, 중동, 쿠웨이트, 이라크, 이란, 아랍에미리트, 이스라엘, 바레인, 카타르, 튀르키예 (10개국)</li> <li>3) 충북 전략산업 업종 대상 지원조건 완화 : 최대 10,000천원까지 지원(자부담 10%) ※ 제출서류 : 공장등록증, 부가가치세 신고서 (분류코드가 해당 전략산업 업종과 일치할 경우, 지원조건이 완화) ※ 대상업종 : 첨단반도체, 융합바이오, 친환경 모빌리티부품, 지능형 첨단부품,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· 셀,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6종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원분야 : 전 세계 규격·인증 571개 대상(붙임참조) ※ 붙임의 지원 대상 규격 표를 참고하고 해당 외 인증은 지원 불가</li> <li>○ 지원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인증비용 - 신규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 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*, 법정대리인 선임비** 등 - 갱신 :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, 필수공장심사 등</li> <li>2) 시험비용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 시험(test) 시 소요비용</li> <li>3) 컨설팅비 : 인증 절차 진행을 위한 컨설팅 기관***의 기술자문료, 서류대행료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 ** 법정대리인 선임비 : 인증·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representative,agent 등)을 선임할 경우 소요비용 ***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'해외규격인증센터'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인정</p>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 연내, 인증 선 획득 후 완료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검증 절차 진행 후 지원금 지급(선착순, CBGMS 상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음에 유의)</li> <li>○ 취득·갱신비의 20% 기업 자부담(부가세 제외, 지원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 분을 자부담으로 인정)</li> <li>○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되며 이후 인증 취득 기업 지원 불가(사업 참가신청 여부와 무관)</li> <li>○ 공신력, 진위성 판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증 한해 지원</li> <li>○ 컨설팅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'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(https://www.smes.go.kr/globalcerti/)'의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함</li> <li>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컨설팅 비용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 청구 시, 초과 분은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금에서 공제</li> </ul> <p>※ 지원금 소진 시 사업종료. 사업종료 후,인증 획득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차년도 사업(2027년)의 예산으로 지원 불가 ※ 다른 부처(ex. 중소벤처기업부),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※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'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'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.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,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 다.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7년도 시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</p>		
지원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지원기준 :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</li> <li>○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.</li> <li>○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, 지원내용과 지원범위, 참여자격, 참여기업 분담금,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,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. 단,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○ 중소·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,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참여기업 각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, 중소기업확인서, 중견기업확인서,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.</li> <li>○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.</li> <li>○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.</li> <li>○ 참여기업과 운영기관,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, 만족도, 선호도, 후속수출성과,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.</li> <li>○ 충청북도, 운영기관,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</li> <li>○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2.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</li> <li>7.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		
정부기관	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: 043-220-3475		
운영기관	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: 043-229-2721		
참가 첨부서류	<p>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☐ [양식] 신청사업 사용계획서.hwp</li> <li>☐ [붙임1] 해외규격인증 취득 완료보고서 양식.hwp</li> <li>☐ [붙임2] 2026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.pdf</li> </ul>		